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35
------------	-----

제출년월일 : '97. 11.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체육진흥기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을 체육회장에 출연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관이 현 조례상에 "체육회 소속직원"으로 임명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관리법 제11조상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영 토록 되어 있는 바
- 기금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안산시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며 기타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코자 함

□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기금관리운영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등 기능이 없으며
 -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제15조(기금운용관)에 기금운용관을 체육회 소속직원중 임명하여 기금을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설치에 따른 조례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회의), 제10조(회계직공무원), 제11조(회계관리), 제12조(수당등)를 신설코자 하며

제5조(기금운용관)중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용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을 체육지원계장으로 개정코자 함

□ 관련 법규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내용별첨
-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 내용별첨
- 지방재정법 제156조 ━━━━━━━━━━━━━━━━ 내용별첨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체육회장에게"를 "일반회계 예산으로"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은행"을 "안산시금고"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관리한다"를 "관리하되, 적립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할 수 없다"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안산시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을 운용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항에 다음과 같이 흐름 신설한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기타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의 규모 및 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체육회상임부회장, 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중 1인,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체육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하고, 서기는 체육지원계장으로 한다.

제6조를 제13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분임운용관 : 문화공보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조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체육회장에게 출연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u>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이자를 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온행에 예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금은 <u>안산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u>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 ----- <u>안산시 금고에 예치한다</u> ② ----- --- <u>관리하되 적립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 도 지출할 수 없다.</u> ③ ----- ----- <u>다음 각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u>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기타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④ 삭제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적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금은 안산체육회에 지원하여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기타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③ 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규모 및 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u>④ 제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⑤ 시장은 제출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u>제5조(기금운용과) 제육회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 출납직원을 따로 임명하여 기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u></p>	<p><u>④ (삭 제)</u></p> <p><u>⑤ (삭 제)</u></p>
<p><u>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u>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 style="margin-left: 2em;"><u>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u></p>
<p>(신설)</p>	<p><u>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u></p> <p><u>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8조(위원의 임기)</u>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신 설)	<p><u>제9조(회의)</u>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신 설)	<p><u>제10조(회계직 공무원)</u>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분임운용관 : 문화광보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재무지원계장 <p>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신 설)	<p><u>제11조(회계관리)</u>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 및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신 설)	<p><u>제12조(수당등)</u>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신 설)	<p><u>제13조(현행 6조와 같음)</u></p>

第19編 財政·經濟一般 第2章 算算·會計 基金管理基本法

第11條 (基金管理委議會) ①基金管理主體는 公共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公共基金別로 基金運用委議會(이하 "委議會"라 한
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委議會를 設置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基金의
경우에는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3·12·31.
95·12·6>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3·12·31>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의 수립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項目支出金額의 變更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決算報告書의 作成
4. 기타 公共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重要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과 基金管理主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財議하는 사항

第19編 財政·經濟一般 第2章 算算·會計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차관 또는 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
는 자가 된다.

1.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政 地方財政法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을 두어야 한다. <개정 93·9·2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임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3·9·23>

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
리·처분 또는 재원관리의 예에 의한다.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35
----------	-----

제출년월일 : 1997. 11. 14.

제출자 : 충무위원회
박공진 위원장 외 10인

1. 수정이유

-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을 체육회 사무국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상적 경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며,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중 1인을 삭제함.

2. 수정주요골자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 3호중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을 삭제하고,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중 1인"을 삭제하고,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체육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6인"을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체육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7인"으로 수정함.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3항 3호 중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을 삭제한다.

제5조 3항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중 1인"을 삭제하고,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체육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6인"을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체육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7인"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p> <p>①~②(생략)</p> <p>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수입금은 다음 각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p>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p> <p>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p> <p>3. 기타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p> <p>①~②(원안과 같음)</p> <p>③</p> <p>1.</p> <p>2.</p> <p>3. 기타 시민의</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②(생략)</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체육회 상임부회장, 기획실장은 당연직이 되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중 1인,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체육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6인 이내로 구성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②(원안과 같음)</p> <p>③</p> <p>.....체 육회장이 추천하는 체육증진에 관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7인</p> <p>.....</p>
<p>④~⑤(생략)</p>	<p>④~⑤(원안과 같음)</p>